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10월 1일
- 회부일자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출연목적
 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(17. 2. 17)된 기관으로,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출연 예정금액: 1,578,814천원 (도비100%)
- 출연내역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-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(기준보조율) | 2021년 (B) | 2022년 (C) | 증감 (D=C-B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도비(100%) | 1,317,177 | 1,578,814 | 261,637 |

5. 검토의견

○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충북여성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음.

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,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,
-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·가족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·연구의 거점기관으로서 존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함.
- 출연금은 전년과 대비하여 2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이는 도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(2명) 및 신규인력(2명)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것임.
- 신규인력의 경우 재단의 부족한 인력(타시·도 60% 수준) 해소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과중 및 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, 신규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조직진단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참고 1

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

□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(기준보조율) | 2019년 (A) | 2020년 (B) | 2021년 (C) | 2022년 (D) | 증감 (E=D-C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비(100%) | 1,205 | 1,205 | 1,317 | 1,579 | 262 |

□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

○ 인건비 (증 226백만원)

- 급여인상(34) / 공무원 대체인력 2(95)* / 신규인력 2(85) / 연구수당(12)

* 현재까지 2명 복귀, 2022년 2명 복귀로 공무원 파견 종료(민선7기 도지사 공약)

○ 경비 (증 27백만원) *인력 4명 증원에 따른 제비용 증가 / 기타(9)

□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사업예산(안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금 액 | 산 출 내 역 | 비고 |
|------|-------|---|----|
| 합 계 | 1,682 | ※ 출연금 1,579백만원 + 순세계잉여금 등 103백만원 | |
| 운영재원 | 1,675 | | |
| 인건비 | 956 | - 재단직원 16명,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 등) | |
| 경 비 | 259 | 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회의운영, 집기구입 등 | |
| 사업비 | 460 | 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| |
| 예비비 | 7 | | |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